

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「민사소송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이 2016. 2. 3.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어 질병, 장애, 연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·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14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, 법에서 위임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법 제143조의2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당사자와의 인적 생활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함(안 제30조의2제1항)
- 법 제143조의2에 따른 진술보조인 허가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

로 하여야 함(안 제30조의2제2항)

- 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법원과 당사자, 그 밖의 소송관계인들의 진술을 상호 중개하거나 설명할 수 있고, 이에 대해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의 행위를 즉시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음(안 제30조의2제3항)
- 법원은 진술보조인이 한 중개 또는 설명행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진술보조인에게 질문할 수 있음(안 제30조의2제4항)
- 진술보조인이 변론에 출석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, 중개 또는 설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(안 제30조의2제5항)
- 법원이 법 제143조의2제2항에 따라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(안 제30조의2제6항)

4.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진술 보조) ① 법 제143조의2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,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.

- 1. 당사자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, 가족,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 당사자와 고용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과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 이 때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의 행위를 즉시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.

- 1.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,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
- 2. 법원과 상대방,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당사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
-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진술보조인이 한 중개 또는 설명행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진술보조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.
- ⑤ 진술보조인이 변론에 출석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, 제3항에 따라 중개 또는 설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⑥ 법원은 제143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 다만, 종전 규칙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제30조의2(진술 보조) ① 법 제143조의2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,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.</p> <p>1. 당사자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, 가족,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2. 당사자와 고용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② 제1항과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과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다음 각 호</p>

	<p>의 행위를 할 수 있다. 이 때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의 행위를 즉시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.</p> <p>1.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,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</p> <p>2. 법원과 상대방,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당사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</p> <p>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진술보조인이 한 중개 또는 설명행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진술보조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.</p> <p>⑤ 진술보조인이 변론에 출석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, 제3항에 따라 중개 또는 설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⑥ 법원은 법 제143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</p>
--	--

하여야 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

연락처

(02) 3480 - 1416